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급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지를 명확히 정의(안 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함.

나.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사유를 확대하고 교체등록 기간을 건설기계 말소 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

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로 포함하는 한편, 말소 후 교체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다.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1년 초과한 건설기계 미등록분 만큼 신규 등록을 허용(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1)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함.

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하는 신규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4항)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등록하는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 산정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함.

마.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시·도)명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사유 중 등록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안 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하나,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 사유에서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을”을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지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영업용의 경우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영업용의 경우 :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3조의2제1항제6호”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법 제3조의2제2항”을 “법 제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로, “교체하는”을 “말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제2항 단서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날부터 1년이 초과한 미등

록분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등록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연식이 3년 이내인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연식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제작연도의 말일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말소 후 교체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말소되고 교체등록되지 않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는 영 시행일에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략)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내용을 다

음 각 호에 따른 등록지의

1. 비영업용의 경우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
민등록지,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영업용의 경우 : 대여사업자
의 사무소 소재지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제한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6호-----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의2제3항-----

-----.
--- 법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
----- 말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체하는 -----

-----.

③제2항 단서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날부터 1년이 초과한 미등록분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③ (생략)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등록이전)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연식이 3년 이내인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연식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제작연도의 말일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법 제5조제4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이전)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
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
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
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
다.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
 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
경(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삭제>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

<삭제>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 201 - 3544